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 규정

신설 2018. 7. 4.

개정 2020. 3.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하 “미래융합대학”이라 한다)에는 학과와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미래융합대학장은 미래융합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평생교육원장은 학장을 보좌하여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학과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⑤ 미래융합대학 학사 운영을 위해 미래융합대학 소속으로 전담 전임교원(이하 “전담교수”라 한다)을 둔다.

⑥ 평생교육원에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⑦ 연구원은 대학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⑧ 행정실에는 실장과 직원을 두고,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⑨ 성인학습자지원센터장은 교육 지원과 상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① 미래융합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래융합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국책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미래융합대학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은 학과장, 전담교수, 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융합대학 운영 규정 개정
2. 미래융합대학 학사 운영 규정 개정
3. 강의전담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의 예산과 결산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융합대학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재정) ① 미래융합대학의 재정은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 사업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미래융합대학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미래융합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